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연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8.

발의자 : 최연혜 · 이채익 · 염동열

김정재 · 정운천 · 김규환

이진복 · 윤한홍 · 조훈현

정갑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「협동조합 기본법」과 「농업협동조합법」 등 다른 조합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완화된 측면이 있음.

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결격사유 중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1항).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제3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(제85조,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	제51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<u>2년</u> 이 지나지 아니한 자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3년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